

선	기관의 장
람	



제 557 호

2004년 1월 27일 화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0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47호(공사입찰공고(공사명:남동국민체육센터신축소방전기공사))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48호(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및환경계획변경공람공고) 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49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 16

회								
람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래 진

2004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08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자원봉사센터에는 회장, 운영위원회 위원 및 소장을 두고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 장 : 1인
2. 운영위원회 위원 : 15인이내
3. 소 장 : 1인

제4조(회장) ①회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의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임기등)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산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하고 임기 만료는 당해 연도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임 한다. 다만 업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선임을 유보하거나 다음 운영위원회 개최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보궐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자원봉사분야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3. 구소속 공무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4.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②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위원이 궐위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규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자원봉사센터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센터 회장 선출 및 소장 임명동의
2.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회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정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이하 “직원”이라 한다) 소장, 운영요원등 5인 이내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명) ①직원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의 임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당연 퇴직, 직권 면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소장의 임기는 근무상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직원임용의 선발 자격은 [별표 1] 과 같다.

제13조(조직체계 및 기능)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보수) ①직원 보수지급 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소장은 일반직 5급 8호봉, 운영요원은 일반직 6급 5호봉과 8급 3호봉으로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 한다.

③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하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감사 등)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등의 복무와 각종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자체감사규칙”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재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17조(회계관리) ①자원봉사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회계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자원봉사센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소장은 당해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확정된 구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결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부.
4. 사업실적 보고서 1부.

제21조(공인) ①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회장 직인
 2.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직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③공인의 관리는 소장이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자원봉사주간 운영)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 ②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평가대회등을 실시할 수 있고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 임용된 소장의 보수는 임기동안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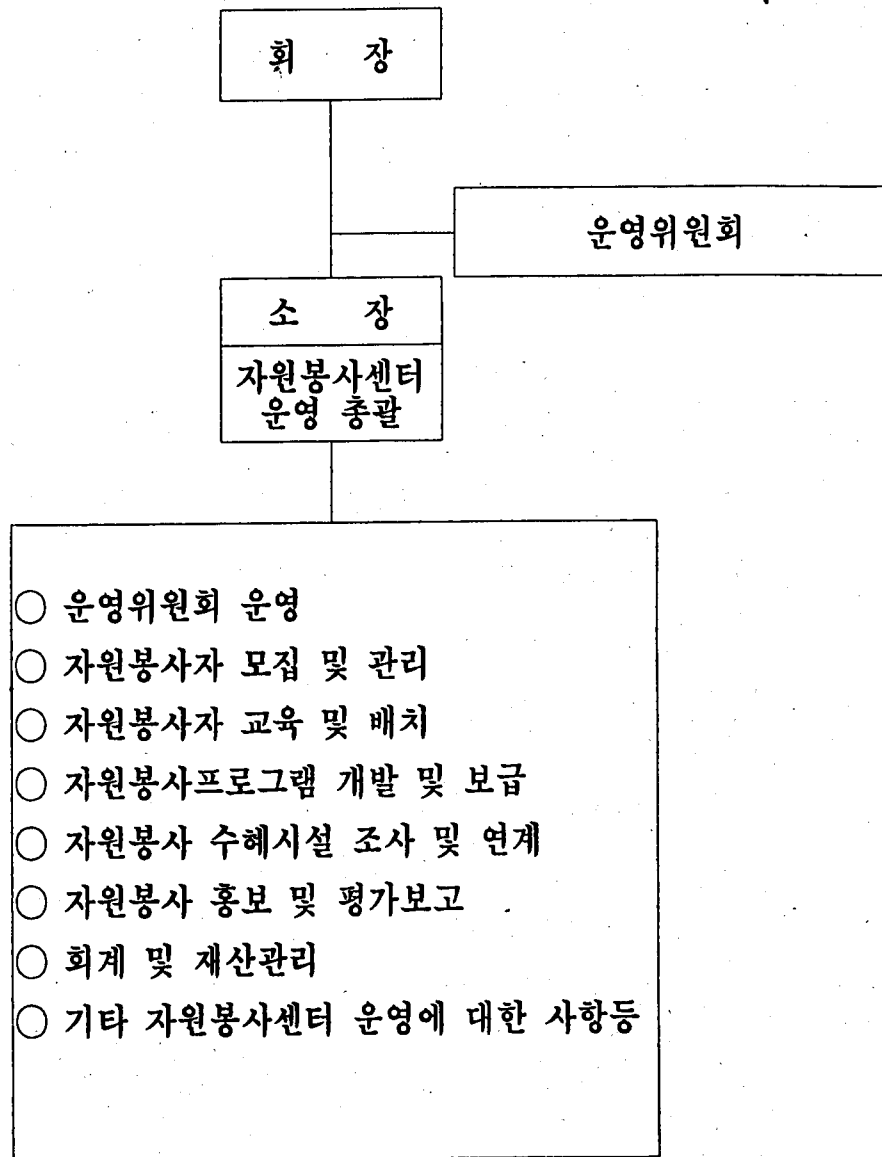
직원 임용 선발 자격

(단위 : 명)

구분	채용 인원	선 발 시 험		자 격 기 준
		1 차	2 차	
계	5			
소장	1	서류전형	면접	○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자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6급 운영 요원	2	"	"	○ 공무원 7급 상당이상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 운영 요원	2	"	"	○ 행정사무보조 일용직근무 3년 이상인 자,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공 무원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및 기능



[별표 3]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회장 직인

2.4cm	
인천광역시남동 구자원봉사센터 회장 인	2 · 4 cm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2.1cm	
인천광역시남동 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인	2 · 1 cm

[별표 4]

자원봉사자 신분증

○ 전면

자원봉사자증
사진
성명 :
남동구자원봉사센터

○ 후면

NO : 200 -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남동구자원 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200 . . .
남동구자원봉사센터소장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이유

최근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다양화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자원봉사센터 회장 및 임기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회의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자원봉사센터내 정원과 임명, 조직체계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자원봉사센터내 직원의 호봉체계,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등 급여 및 감사,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필요한 재원,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신청 및 교부등 보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결산사항에 대한 규정함.
(안 제19조 내지 제20조)
-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인규정(안 제21조)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와 봉사활동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등을 규정함.(안 제22조)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47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 소방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라. 공사개요

- 간선설비공사 1식, - 소방설비공사 1식, - 비상등설비 1식

마. 설계금액 : 41,7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 1월27일(화) 09:00 ~ 2004년2월2일(월) 11:00

사.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2월2일(월) 13: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아.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4년1월27일(화)~2004년2월2일(월) [건축과]

자.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
(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이용자 참가자격등록업체
로서,

나.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등록업체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41,789,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다.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외

7. 낙찰자 통보 : 입찰 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2004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제2004- 48호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1. 2001. 10. 17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1-182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득한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변경된 지구단위내용으로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시 행 자	시행면적	공람내용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남동구 서창동 330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28,267.9㎡ (증 852.9㎡)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나. 주요 변경내용

- 사업면적 : 증 852.9㎡(사업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
- 토지이용계획
 - 주택용지 280,402.7㎡(감 1,120.3㎡), 공공시설용지 147,865.2㎡(증 1,973.2㎡)

다.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계획과(☎032-453-2692)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49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1회용품의 사용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준수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즉시 제재처분(과태료)을 부과하는 등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
-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시 이행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안 제10조)
- “주민 신고 포상금”제도의 도입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2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번호 : 453-24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5.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 정 사 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02. 2. 24.)의 개정·시행('03. 7. 1.)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03. 7. 28.)의 개정,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폐정 67511-949호, '03. 9. 3.)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시 이행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안 제10조)
- “주민 신고 포상금 제도”의 도입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월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16조)

☐ 참 고 자 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2003. 7. 28. 환경부예규 제232호)
- 환경부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 (폐정67511-949호, '03. 9. 3.)

인천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억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의 촉진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주석, 알미늄 구분)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공·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행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3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기준)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구청장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부기간이 도과하면 감경(50%)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의견제출)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상제공 하는 행위포함)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cm² 이하의 종이봉

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8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9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범규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②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과태료징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감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첨부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사·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10	30	50	3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300	300	300	
6 반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반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활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 제3항)	50	70	100	

[별지 제1호 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받 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 건 제 출	기 관 명		부 서 명	
	주 소			
	기 한	년 월 일까지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앞면>

《 의 건 제 출 사 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문서번호 : (200 . . .)
2. 당사자	성 명(명 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받 음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금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받 음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감경대상자용)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금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
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 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 (변 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 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받 음 :

발 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한자)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붙 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고지서 번 호	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 서식은 A4형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 락 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절 --- 취 --- 선 -----

신 고 접 수 중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illegible]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루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형으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 구 동 변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இயை இயை இயை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절 --- 취 --- 선

사 실 확 인 회 보 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③ 기타사항 : ()

일 일 일

확인자 :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 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일반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새마을금고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 인천광역시
O C R

영수필통지서 (구청보관용)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기내	까지
	원

납기후	까지
	원

(아전)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 1회용종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수 없으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농바우금고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 1회용종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수 없으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 인천광역시
O C R

영수필통지서 (구청보관용)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기내	까지	까지
원	원	원

(아진)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 파 :

담당자 :

전화번호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 1회용종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수 없으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